

##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2. 2.

발 의 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김홍신의원(3건, '00.5.30, '01.10.24, '01.12.27 각각 발의), 심재철의원('00.6.2 발의), 송석찬의원('00.9.26), 김원웅의원('00.11.15 발의), 장태완의원('00.10.27, 발의), 김원웅의원('00.11.15, 발의), 안상수의원(2건, '00.11.23, '01.2.6 각각 발의), 김용학의원('00.12.4 발의), 서청원의원('00.12.4 발의), 이연숙의원('00.12.7 발의), 정균환의원('00.12.11 발의), 엄호성의원('00.12.15 발의), 이양희의원('01.2.5), 이강두의원('01.2.13 발의), 박원홍의원('01.5.21 발의), 오세훈의원('01.11.27 발의), 권기술의원('01.12.17 발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 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 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나. 2002년 1월 23일에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 2. 22까지 2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20건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다.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기 20건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재심사함.

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부 신설에 따라 이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며,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또한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 국회의원

- 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 나.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안 제37조제1항제17호 및 제46조의2)
-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 라.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안 제93조의2).
- 마.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안 제114조의2)
- 바.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법률 제 호

##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議長이 心神喪失 등 부득이한 사유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게되어 職務代理者를 指定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渉團體所屬인 副議長의 順으로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女性委員會

女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歲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게 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所管常任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政府는 大統領이 法律案을 公布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제1항중 “7日”을 “10日”로, “國會”를 “國會 所管常任委員會”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期間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理由를 所管常任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중 “宣布”를 각각 “議長席에서 宣布”로 한다.

제1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監票委員으로 指名된 議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議員을 제외하거나 다른 議員을 監票委員으로 指名할 수 있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12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12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p>	<p>第12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① (현행과 같음)</p> <p>②議長이 心神喪失 등 부득이한 사유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게되어 職務代理者를 指定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渉團體所屬인 副議長의 順으로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p> <p>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p> <p>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p> <p>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 -----</p>

1. ~ 16. (생략)

<신설>

② (생략)

第46條의2(女性特別委員會) ①女性的福祉와 權益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女性特別委員會를 둔다.

②女性特別委員會의 委員數는 20人 이내로 하되, 議長이 각 交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③第4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女性特別委員會에 準用한다.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④ (생략)

⑤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所管 常任委員會의 豫算審査內容을 존중한다. <후단신설>

⑥~⑧ (생략)

<신설>

1. ~ 16. (현행과 같음)

17. 女性委員會

女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삭제>

第84條(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歲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게 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所管常任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⑥~⑧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



第98條(議案의 移送)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 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訓令·例規·告示 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7日 이내에 이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第110條(表決의 宣布) ①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제목을 宣布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8條(議案의 移送) ①(현행과 같음)

②政府는 大統領이 法律案을 公布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 등)

①-----  
-----  
-----  
-----  
-----  
10日-----國會 所管常任委員會-----

그 期間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理由를 所管常任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110條(表決의 宣布) ①-----  
-----  
-----議長席에서 宣布-----  
-----

② (현행과 같음)

第113條(表決結果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宣布한다.

第114條(記名·無記名投票節次)

①(생략)

②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에서 若干人の 監票委員을 指名하고 그 委員의 참여하에 職員으로 하여금 名牌와 記名·無記名投票의 數를 點檢·計算하게 한다.

<후단신설>

③ (생략)

<신설>

第128條(報告·書類提出要求)

① (생략)

<신설>

第113條(表決結果宣布) -----

議長席에서 宣布-----

第114條(記名·無記名投票節次)

①(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監票委員으로 指名된 議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議員을 제외하거나 다른 議員을 監票委員으로 指名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第128條(報告·書類提出要求)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